

<2024 오현준 정통교육학 1권>

62쪽 연필아이콘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📌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결정

1. 과밀학급: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
2. 과대학교: 학교당 학급 수 36학급 이상인 학교 ⇨ 복수 교감 설치(명령통일의 원리 ×)

65쪽 [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(「초중등교육법」 제28조)] ⇨ 아래 내용으로 대체

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(「초중등교육법」 제28조)

제28조 【**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**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2. 학업 중단 학생

3.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.

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, 교육감은 이를 지도·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.

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학업중단숙려제)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, 방법, 절차,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73쪽 (3)-①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- ① **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**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

112쪽 5-[연필아이콘]-[1줄]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「대학」(예기 42장)과 「중용」(예기 31장)

149쪽 ㉑-1, ㉑-2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1. 문제점

- (1) 관료주의적 교육행정: 교육보다 행정을 우선하는 중앙집권적·관료 편의주의적 행정
- (2) 전체주의적 훈육: 개인의 자유와 존엄보다 집단의 도덕과 가치를 강제
- (3) 도구주의적 교육관: 교육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
- (4)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인해 왜곡적인 교육이 진행

2. 교육적 의의

- (1)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적 학교로 학생층이 이동
- (2) 한국민의 교육열에 의한 보통학교교육의 확대

237쪽 ㉔-㉕-4줄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㉕ 실존(existence)은 본질(essence)에 선행한다: 인간의 존재(실존)가 먼저 있고, 자신의 추상적·보편적 본질(□이데아, 이성)에 대한 규정은 뒤에 오게 된다는 말로, 오직 나의 실존만이 나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다. ⇨ 인간의 실존은 도구(道具)와는 전혀 다른 존재방식을 갖는다. 도구는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도구적 존재는 본질이 앞선다.
...

317쪽 3-(1)-㉔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㉔ **국가교육위원회**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**국가교육위원회**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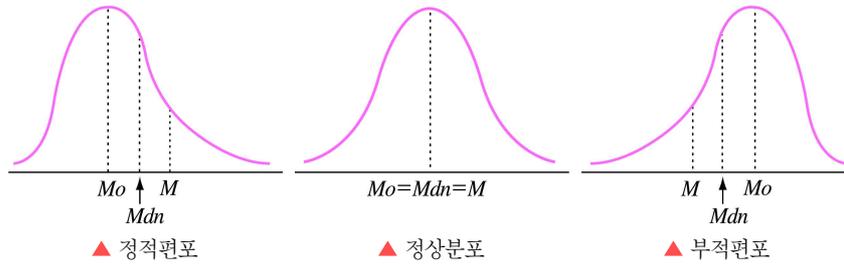
345~356쪽 ⇨ 첨부파일로 대체

458쪽 ㉔-box 안-2줄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- 광고 전: 유명연예인(모델, UCS) ⇨ 호감(UCR) / 상품(NS) ⇨ 호감 ×
- 광고 중: 상품(NS) + 유명연예인(UCS) ⇨ 호감(UCR)
- 광고 후: 상품(CS) ⇨ 호감(CR)

<2024 오현준 정통교육학 2권>

815쪽 1. 비교 - 그래프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

925쪽 [더 알아보기]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더 알아보기

카리스마적 지도성 : 하우스(House), 콩거와 카눈고(Conger & Kanungo) 21. 국가직 7급

...

972쪽 표안-학교운영위원회-제32조(기능)-②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| 구분 | 관련 법률 | 관련 법률 내용 |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|
| 학교운영위원회 | 초·중등 교육법 | 제31조 (설치) | ① 국·공립 및 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·운영 ②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인사로 구성 ③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 ⇨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규정 |
| | | 제32조 (기능) | ① 국·공립: 심의기능 ② 사립: 심의기능 (단, 공모교장 공모와 초빙교사 추천은 제외 & 학칙 제·개정은 자문)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: 국·공·사립 모두 심의·의결기능 |

1019쪽 2-표안-보통교부금-(재원)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| 지방 교육 재정 (교육비 특별 회계) | 국가 지원 |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(가장 규모가 큼.) | 보통교부금 | (재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| | | 1. 해당 연도의 내국세[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(稅目)의 해당 금액은 제외] 총액의 1만 분의 2,079(20.79%)의 97/100 2. 해당 연도의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금액 • (교부기준)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 교부 • 종전의 봉급교부금(의무교육기관 교원) 및 증액교부금(저소득층학생 지원금, 특성화고교 실습지원금 등)을 흡수·통합한 금액 |

1020쪽 3-(4)-①-㉠ 3줄 ⇨ 아래와 같이 수정

(4) 종류: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

① 보통교부금(법정금액)

㉠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

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.

- ㉠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(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,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) 총액의 2,079/10,000의 97/100과 해당 연도의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